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14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 김주영 · 민병덕 · 복기왕

박지혜 • 박해철 • 오세희

박상혁 • 박희승 • 윤후덕

윤준병 · 정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경제발전이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 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인구 기준)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

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 등으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열 악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철도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신설).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 「지방자치법」 제198조에</u>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		
	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		
	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		
	<u>을 말한다)</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